

# 日帝下 自生的 農民組織에 關한 史的 研究

朱 奉 圭\*

##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農民組織結成의 背景
- III. 農民組織結成의 性格
- IV. 総 合

## I. 問題의 提起

日帝下 農業發展段階의 歷史的인 究明은 土地收奪을 主軸으로 하는 本源的 資本蓄積期下에서의 農業發展內容을 비롯하여 產米增殖을 中心으로 한 農民支配와 小作問題의 本格的인 展開時期, 그리고 農產物價格과 銀價現象의 激化로 말미암은 農村經濟의 不況時期 및 日帝末期의 農民의 苛酷한 戰時的 負擔의 强要時期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가운데 日帝初期에 土地收奪을 目的으로 하여 施行을 보게 된 土地調查事業의 完了와 더불어 第一次大戰의 終熄에 따른 民族自決思想 및 運動의 推進展開 以後에 自生的인 農民組織의 結成이 農民의 自律的 地位向上 增進의 次元에서 이룩된 바 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동안 日帝下 自生的 農民組織에 關한 歷史的인 意義 및 性格 究明은 거의 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未開拓 및 荒蕪地로 放置되어 있는 狀態에서 그에 關한 歷史的인 性格을 定立함에 本研究의 目的을 둔다.

## II. 農民組織結成의 背景

日帝下 自生的 農民組織結成 以前의 農民組織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組織으로서의 契와 居留日本人의 權益擁護, 相互親睦 및 農事改良資金의 融通, 資材의 共同購入, 그리고 生產品의 有利한 販賣를 圖謀키 위하여 조직된 組合 또는 會가 있었다.

當時 우리나라에 기주하는 日本農業移民은 아직 極少數에 불과하였지만 이들 組合과 會는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農業經濟學科 教授.

1905年 露日戰爭後 高利貸에 의한 土地掠奪, 官權에 의한 土地占有를 本格化함에 있었다.

물론 最初의 日本移民의 農業組織에는 1904年 6月 群山駐在 日本領事館의 管轄區域內에서 土地를 買收한 日本人들이 자기의 權益擁護를 위하여 조직한 群山農事組合이 있었으며, 1905年 4月에는 同組合에서 江景土地組合이 分離된 바 있었지만, 곧 이어 이들 두組合은 統合되어 群山土地聯合組合을 發足시킨 바 있었다. 이 以外에도 1905年 7月에 釜山鎮方面에서 農業을 經營하는 日本人이 生產品을 有利하게 販賣하기 위하여 조직한 釜山農業組合, 1906年 11月에 大邱附近의 菜蔬栽培者가 조직한 大邱農會와 1907年에 設立된 大邱農產物市場組合, 그리고 1907年 9月에는 新義州 및 安東縣에 거주하는 日本人이 平安道地方에서 柞蠶業을 經營하기 위하여 設立한 韓國柞蠶興業組合 등이 있었다.<sup>(1)</sup>

그밖에 1905年에는 韓國內에 居留하는 日本人官吏, 統監府 勸業模範場의 職員, 農林學校職員, 穀物貿易商 및 農事經營者 가운데 有志 등을 主軸으로 韓國에 있어서 農事改良發達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仁川에서 創立된 韓國中央農會가 있었다.

1911年 10月에 朝鮮의 農事獎勵는 普通農事를 비롯하여 棉作, 養蠶, 畜產의 四大部門에 集約되어 있다는前提下에 總督府를 비롯하여 各道에 四大部門마다 專門技術官을 配置하여 그들로 하여금 各擔當農事의 指導獎勵에 臨하도록 하는 過程에서, 開城畜產同業組合을 嘴矢로 하여 全國에 各種 產業團體가 雨後竹荀과 같이 蔑出하기 되고, 이에 따라 名實相符合普通農事組合, 棉作組合, 養蠶組合 및 畜產組合 등이 각각 設置되어 있었던 것이다.<sup>(2)</sup>

水稻作 農耕地의 所有者를 構成으로 하여 當局의 農業政策의 下請 및 小作人の 保護 그리고 地主의 利益增進을 目的으로 組織된 協調 및 恩惠의 組織으로서 地主會<sup>(3)</sup>가 있었으며, 그 會員은 耕地面積 1町步以上 所有者 或은 10町步以上 所有者인 경우 등 地主會마다 區區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地主會는 事務所를 郡廳內에 두고 郡守를 會長으로 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事業을 遂行하고 있었던 組織이었다.<sup>(4)</sup>

- ① 試作畠, 採種苗圃 및 採種田의 設置
- ② 種子의 配付, 貸付, 交換 및 共同購入
- ③ 肥料·農機具의 貸與 및 購入資金의 貸付
- ④ 農事의 講習·講談, 小作米 및 立稻品評會의 開催
- ⑤ 優良小作人の 表彰.

(1) 文定昌, 『朝鮮農村團體史』, 日本評論社, 1942, pp. 3~9.

(2) 朱奉圭, 『韓日農業經濟史研究』, 1983, p. 300.

(3) 文定昌, 上揭書, 1942, pp. 60~61.

(4) 同書, p. 66.

地主會의 活動과 事業은 朝鮮米作農業의 改良發達上 寄與度가 큰 것이었으나 地主會의 名稱은 階級的인 團體性格이 濃厚하다는 立場에서 地主會라는 名稱 代身에 勸農會, 農友會 및 勸業會 등의 名稱으로 代替 使用되고 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組織들은 設立 初期에는 어느 정도의 成果를 거둘 수 있었으나 時間의 흐름에 따라 各 部門의 個別的 團體를 統合할 필요가 高潮되었을 뿐만 아니라, 同一 農民에 對하여 數種의 相異한 團體費를 徵收함에 따라 農民들의 적지 않는 反撥도 있었고 동시에 農事의 指導獎勵에 관한 各種 產業組織의 整理統合을 圖謀하여야 한다는 意見의 集約下에 1919年 朝鮮農會令을 發布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서 產業組織이 農會로 統廢合되어 마침내 系統農會로 再編된 바 있었다.

系統農會는 行政區域을 境界로 府郡島農會, 道農會 및 朝鮮農會의 3種類가 있었으며 朝鮮農會令에 의거하는 일종의 公共的인 組織이었다. 따라서 會長團은 郡島農會의 경우 道知事が, 道農會 및 朝鮮農會의 경우 朝鮮總督이 任免하였으며, 農會의 여러 가지 事業도 地方行政機關과 總督府의 承認이 필요하였다. 그 主된 事業內容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sup>(5)</sup>

- ① 農業의 指導獎勵에 관한 施設
- ② 農業에 從事하는 者의 福利增進에 關한 施設
- ③ 農業에 關한 研究 및 調査
- ④ 農業에 關한 紛議의 調停 및 仲裁
- ⑤ 農業의 改良發達을 도모함에 필요한 事項
- ⑥ 農業에 關한 事項에 대한 行政官廳에의 建議
- ⑦ 行政官廳의 詔問에 關한 答申.

이러한 系統農會는 朝鮮農會令에 根據를 둔 公共團體였다. 따라서 一定한 資格을 갖춘 農民은 모두 農會에 强制로 加入되었을 뿐만 아니라 會員으로서의 모든 義務도 履行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물론 朝鮮農會令은 그 內容이나 法令의 形式에 있어서 日本의 帝國農會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植民地 朝鮮에 適切하지 않는 것만을 規定하고 있었다. 이에 全文 12個條로 되어 있는 朝鮮農會令의 特徵을 살펴보면

첫째, 農會를 農業政策의 擔當機關으로서 또는 行政官廳의 別動隊로서 法人化한 점이다. 둘째, 農會의 基本單位를 面, 里 또는 洞에 두지 않고 府, 郡, 島로 한 점이다.

(5) 朱奉圭, 上揭書, pp. 301~302.

세째, 通常議員의 選出方法에 있어서 選舉와 任命의 折衝主義를 채택한 點이다.  
넷째, 強制加入制와 會費의 強制徵收를 認定한 點이다.

### III. 農民組織結成의 性格

日帝下에서의 自生的인 農民組織으로서 最初의 것은 小作人相助會를 들지 않을 수 없다. 小作人相助會이란 1921年 8月에 品質向上, 知識啓發, 農業研究 및 風俗改良의 綱領을 들고 1921年 8月에 創立된 團體로서 그것의 役割과 機能은 1922年 2月 19日 結成組織된 普州勞動共濟會에서 實質化되고 있었다. 勞動共濟會는 形式的으로는 勞共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組織的으로는 勞共과는 달리 勞動部와 農民部를 設置運營하고 있었다.<sup>(6)</sup>

普州勞動共濟會의 下에 있던 勞動部가 어찌한 勞動者를 어느 정도로 組織하고 있었으며 어찌한 活動을 展開하고 있었는가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勞動存運動을 展開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約 3,000名 會員 가운데 그 大半이 小作農으로 構成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面에서는 農民組織의 性格을 띠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小作料引下를 비롯하여 小作權保障 및 地稅의 地主負擔 등을 主로 하는 小作問題를 提起하면서 解決策을 促求한 先進的인 自律的 農民運動의 推進・展開의 組織體가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點에서 普州勞動共濟會는 日帝下 自生的인 農民組織의 한 類型이 되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小作人相助會는 小作人相互間의 利害增進에 目的을 두고 地主에 對한 小作條件의 改善을 위한 要求를 貫徹키 위해서 組織되어 있었으며, 普州地域의 경우 定租廢止를 비롯하여 小作料 5割, 地稅・附加稅의 地主負擔, 小作料運搬 1里 以內, 物品贈與全廢, 無償勞役全廢, 斑稅全廢, 그리고 斗斑使用 등을 요구하였다.<sup>(7)</sup>

順天地域의 경우에는 地稅公課金의 地主負擔을 비롯하여 小作權에 對한 移動禁止, 無償奉仕禁止, 그리고 小作料運搬 1里 以內의 施行・貫徹을 위한 것이 主된 目的이 되어 있었다.<sup>(8)</sup>

한편 普州地域과 順天地域에서 小作人相助會의 組織結成에 의한 小作農 要求條件은 當時 朝鮮의 小作農의 切實한 要求를 反映한 것으로서, 그것은 1920年에서 1927年 末까지 全朝鮮에서 發生한 456件의 小作爭議 가운데 첫째, 小作權移動에 基因하는 것이 61.0%였으며

(6) 金森襄作, 「朝鮮勞動共濟會について」(『朝鮮史叢』, 第3號, 1980年 6月), p. 252.

(7) 『東亞日報』, 1922年 10月 27日字.

(8) 『東亞日報』, 1922年 12月 26日字.

(9) 『東亞日報』, 1923年 3月 10日 乙 13日字.

둘째, 小作料引下要求에 基因하는 것이 18.0%이었고 세째, 地稅公課의 地主負擔要求가 5.7 %<sup>(9)</sup>로 그 合이 전체의 약 85%를 占有하고 있었다는 點에서 組織結成運營의 意中을 알 수 있다.

普州勞動共濟會의 小作部는 그것이 主軸이 되어 1922年 9月에 朝鮮 最初로 小作農民의 集會 즉 小作勞動者大會를 開催하여 主로 自律의이며 自生的인 農民組織團體로서의 面貌를 浮刻시키고 있었다. 小作勞動者大會에서는 각 面마다 普州勞動共濟會의 出張所를 設置하고 이에 多數의 小作農을 組織化하기로 決議한 바 있었고<sup>(10)</sup> 이 決議에 따라서 그 해의 年末 까지 普州郡 內에 數個의 出張所가 設置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邢外에서는 泗川郡 西浦面을 비롯하여 河東郡 金谷面, 北川面에 각 支會가 設置되기에 이르렀고 會員數만도 無慮 數千名에 達하였다. 동시에 組織擴大에 隨伴한 小作部의 實行委員도 當初의 10名에서 50名 으로 增員하여 農民組織으로서의 性格을 뚜렷이 띠게 되었다.<sup>(11)</sup>

全北井邑郡에 있는 朝鮮勞動共濟會 井邑支會에서는 小作人組合을 組織하기 위하여 各 方面으로 努力한 結果 1,200餘名의 加入會員을 確保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小作農民들의 團體活動이 뚜렷해지자 地主들은 이에 對應하는 地主會를 開催하고 小作人們과의 摩擦을 避하기 위한 對策을 協議한 바 있었으며<sup>(12)</sup> 日帝의 官廳當局은 朝鮮勞動共濟會의 宣傳組織活動을 妨害하는 措置를 取하기도 하였다.<sup>(13)</sup>

朝鮮勞動共濟會의 地域的 組織結成이 이와 같이 擴散됨에 따라서 地域的 聯合를 形成하고 나아가서는 全國的인 聯盟體의 結成이 이룩되어 朝鮮勞動聯盟會로 結成組織된 바 있었다. 聯盟會의 綱領<sup>(14)</sup>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吾人은 社會歷史의 必然한 進化理法에 의하여 新社會建設을 企圖함.

둘째, 吾人은 共同의 힘으로 生活을 改造키 위하여 此에 關한 知識의 啓發 및 知識의 進步를 企圖함.

세째, 吾人은 現社會의 階級的 意識에 의하여 一致團結함을 企圖함.

한편 1922年 12月에는 順天郡 西面에서 小作農民들이 地主의 小作料의 濫徵에다 稅金까지 小作人에게 轉嫁케 하고 있다는 事實에 反旗를 들고 小作人 1,600名이 西面 農民大會를 結成・組織한 바 있었고<sup>(15)</sup>, 이어서 1922年 12月에 順天郡 雙岩面에서 地主負擔 地稅의 小

(10) 『東亞日報』, 1922年 9月 22日字.

(11) 『東亞日報』, 1922年 9月 21日, 22日 및 23日字.

(12) 『東亞日報』, 1922年 10月 20日字.

(13) 『東亞日報』, 1922年 9月 22日字.

(14) 『東亞日報』, 1922年 10月 20日 및 21日字

(15) 『東亞日報』, 1922年 12月 18日字.

作人轉嫁, 小作權移動에 反對하는 約 1,000名의 小作農이 雙岩面에서 小作農民大會를 結成·組織하여 地主에게 抗拒하는 自律的이며 自生的인 農民組織으로 浮刻된 바 있다.<sup>(16)</sup> 雙岩面 小作農民大會에서는 첫째 地稅公課金은 地主貢擔으로 할 것, 둘째 小作權을 移動 치 말 것, 세째 無償奉仕를 禁止할 것, 넷째 小作料運搬은 1里以內로 할 것 등을 決議하였다.<sup>(17)</sup>

위와 같은 自律的이며 個別的인 農民組織의 結成에 相應하여 1923年 2月 順天面에서는 小作聯合會가 結成·組織되고 이어 4月에는 順天農民大會 聯盟會로 發展하여 順天地域에서 的 自律的 및 自生的인 農民組織으로서 浮刻되었다. 1924年 末에는 順天郡에 20個의 自生的인 農民組織이 結成된 바 있었고 會員數만도 無慮 12,000餘名에 達하여 實로 朝鮮 最大的 自律的이며 自生的인 農民組織이 되어 있었다. 組織形態를 살펴보면 組合의 末端組織으로서 里를 單位로 하고 그 構成員은 20~30名 程度로 하고 있었으며, 그 위에 區單位의 組織을 두어 20個 區를 하나의 組合單位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1個區로부터 1~2名 程度의 代表를 執行委員으로 選出하여 合議制에 의한 民主體制의 바탕에서 順天農民大會聯盟會의 運營을 期하고 있었다.

當時 順天農民大會聯盟會는 總會를 開催하고 다음과 같은 內容을 決議하고 組織的인 戰爭을 展開한 바 있다.<sup>(18)</sup> 즉 ① 地稅를 返還치 아니한 地主의 氏名을 聯合會로 報告할事, ② 地稅를 推尋한 委員을 各 面別로 2名을 選出하여 協議·派遣케 할事, ③ 無過失 小作移動에 對하여서는 各 面單位에서 處理하되 處理不能할 時에는 즉시 本聯合會에 通知할事, ④ 新小作人에게는 播種施肥 등 無用의 費用負擔이 없도록 하는 內容을 各 主要處에 廣告를 優先 粘付할 事 등이었다.

安東市에서는 豊山小作人會의 農民組織을 主軸으로 하여, 그리고 또한 榮州郡에서는 豊基 小作人組合이 農民組織의 主軸이 되어 農民活動을 積極的인 側面에서 展開시킨 바 있었다. 즉 安東郡 豊山小作人會의 農民組織에서는 1924年 4月에 惡德地主와의 爭議 때문에 春耕을 하지 못한 會員 小作人을 위해서 後援 糧穀을 거두어 주는 運動을 展開한 바 있으며<sup>(19)</sup>, 또한 7月에는 春收作物의 小作料는 2割 以內로 하고 秋收作物은 畦 4割, 田 3割 5分으로 하기 위한 戰爭을 猛烈히 展開한 바 있었다.<sup>(20)</sup> 이 過程에서 春收作物 小作料 2割 以內의 條件을 위해 戰爭하던 農民의 小作權을 剝奪한 地主가 있어 이에 對抗하여 農民

(16) 『東亞日報』, 1922年 12月 26日字。

(17) 『東亞日報』, 1923年 1月 3日 및 1月 27日字。

(18) 『東亞日報』, 1923年 4月 27日字。

(19) 『東亞日報』, 1924年 4月 14日字。

(20) 『東亞日報』, 1924年 8月 17日字。

들이 共同으로 強制小作을 위한 農耕鬭爭을 하다가 義務妨害罪의 名目으로 檢束된 事件도 있었다. <sup>(21)</sup>

全州에서는 全州小作人相助會의 農民組織이 主軸이 되어 小作權移動에 反對하는 鬭爭을 展開한 바 있었다. 200餘 農民들이 公會堂에 모여 鬭爭方法을 論議하고 小作權喪失乞人團을 맨들어 各 地主의 집을 集團的으로 訪問하여 行動토록 하였으며, 地主의 住宅를 찾아간 200餘 農民들은 警察의 制止로 數時間 동안이나 육신각신 하다가 解散한 事件이 있었다. <sup>(22)</sup> 그리고 全北 益山郡에서도 1923年 5月 18일에 200餘名의 小作人이相助會 臨時會館인 裡里天道教教堂에 雲集하여 小作權回復을 위한 籠城鬭爭을 展開한 바 있었다.

日帝下 自生의이며 自律의 農民組織은 1920年代에 접어 들면서 活潑하게 展開된 바 있었고 特히 그것은 南部地域에서 크게 展開되었다. 왜냐하면 이 時代에 南部地域에 大規模의 小作爭議가 展開되어 그 要求貫徹率도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0年代 前半의 大規模의 小作爭議는 20年代 後半에 접어들면서 그 限界에 부딪치게 되었다. 小作爭議에 對한 組織의 抑壓이 뒤따르고 동시에 1930年代에 들어와서는 小作爭議를 事前에 防止하기 위한 法體系整備를 斷行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法體系整備의 斷行 가운데 代表의 것은 곧 小作調停令<sup>(24)</sup>과 農地令<sup>(25)</sup>發動이었다.

위와 같은 與件下에 自生의이며 自律의 農民組織의 結成이 摸索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나타난 農民組織이 바로 農民社이었다. 自生의 農民組織으로서의 農民社는 小作爭議와 같은 行動으로써 그리고 地主와의 鬭爭을 통하여 地位를 向上增進코자 하는 側面에서가 아니고 農民自身의 經濟的 基盤을 確立하여 之으로써 農民의 地位向上을 圖謀코자 함에 있었다. 그리하여 農民社는 日帝統治下 朝鮮에 있어서 1925年 10月부터 約 10餘年間 活動을 展開한 朝鮮農民의 自生의 自主의 農民組織이었다.

(21) 『東亞日報』, 1924年 10月 9日字。

(22) 『東亞日報』, 1923年 6月 9日字。

(23) 『東亞日報』, 1923年 5月 24日字。

(24) 朝鮮小作調停令이란 다음과 같은 要旨의 것이었다. ① 地主 小作人間에 小作料 기타 小作에 관한 爭議가 일어났을 때當事者の 申告에 의하여 法院에서 調停하도록 함. ② 調停事件이 府郡島의 小作委員會에 附議시켜 調停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러한 措置를 取하도록 함. ③ 調停成立은 裁判上の 利害와 같이 取扱되고 끝까지 調停을 보지 못하면 民事訴訟事件이 될 수 있도록 함.

(25) 農地令이란 耕作을 目的으로 하는 農地의 賃貸借에 適用하기로 하고 우선 舍音의 惡弊를 除去하기 위하여 地主와 舍音 기타 小作地管理者를 設定할 경우에는 이것을 屆出케 하고 地方官署는 그 人物의 適否를 小作委員會의 意見에 따라 決定할 뿐만 아니라 小作權 移動을 防止하기 위하여 普通作物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小作의 경우는 最低年の 時限을, 그리고 桑園, 果樹 등 永年作物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小作은 7年을 下廻할 수 없도록 規定함으로써 小作權의 安定을 圖謀코자 하는 것이었다.

農民社의 創立大會는 1925年 10月 29日 서울에서 開催된 바 있었고 創立當時 農民社의 規約을 다음과 같이 定하였다. <sup>(26)</sup>

첫째, 農民社의 目的은 農民啓發에 두도록 한다.

둘째, 農民啓發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우선 月刊雜誌『朝鮮農民』을 發行하도록 한다.

세째, 社友를 募集도록 하고 社友는 每年 金 1圓을 納付하며 月刊雜誌를 配布하는 以外에 本社에서 定한 特典을 賦與하도록 한다.

네째, 農民社 事業에 特別히 贊助하는 사람을 特別社友로 한다.

다섯째, 農民社 事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理事 若干名을 두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農民社는 初期에 있어서 雜誌發行을 主된 事業으로 한 農民啓蒙團體였으며 그 후 購買事業을 中心으로 한 農業協同組合事業을 하는 農民團體였다. 그리하여 農民社의 主要事業으로서는 啓蒙事業을 비롯하여 幹旋事業을 中心으로 한 農業協同組合事業이었다. 啓蒙事業<sup>(27)</sup> 가운데 主된 事業內容은 月刊雜誌『朝鮮農民』과 『農民』의 發行이었으며 그 目的是 農民啓蒙과 啓導에 있었다. 自生의 農民組織으로서의 農民社는 雜誌發刊을 통한 啓蒙事業 以外에 農民夜學<sup>(28)</sup>을 媒介體로 하여 啓蒙事業을 展開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巡迴講座 및 講演會開催<sup>(29)</sup> 등을 通하여 農民啓蒙事業에 實質化를 圖謀하고 있었다.

自生의 農民組織으로서의 農民社는 啓蒙事業推進과 더불어 幹旋事業을 主된 推進對象으로 하고 있었다. 農民社의 幹旋事業은 農產物의 販賣와 더불어 購買가 主된 것이 되어 있었고, 農產物 販賣幹旋品目으로서는 蠶絲를 비롯하여 生絲, 生麻, 棉花, 棉布, 生苧, 繩紗, 米穀類 및 青蜜 등<sup>(30)</sup>이 주된 것이었으며, 동시에 購買幹旋品目으로서는 稻拔機를 비롯하여 移植兼點播機, 揚水機, 製繩機, 蠶絲器具, 各種 肥料, 滿州粟 등<sup>(31)</sup>이 있었다.

農民社의 幹旋部는 經濟部로 改稱되고 이 經濟部의 指導下에 經濟機關으로서 農民共生組合을 結成組織하여 그의 運營을 圖謀하고 있었으며, 當時에 運營內容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sup>(32)</sup>

첫째, 組合資金의 充當으로서는 出資金을 비롯하여 借入金, 義捐金 및 積立金으로 하도

(26) 『東亞日報』, 1925年 10月 2日字.

(27) 姜在彦·飯沼二郎編, 『近代朝鮮の社會と思想』,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報告, 未來社, 1981, p. 213.

(28) 同書, p. 215.

(29) 『東亞日報』, 1932年 8月 27日字.

(30) 姜在彦·飯沼二郎編, 上揭書, p. 216.

(31) 同書, p. 217.

(32) 承寬河, 「朝鮮農民共生組合第一回總會後の所感と展望」(『農民』, 第4卷 第3號, 1933. 3). pp. 7 ~10.

록 한다.

둘째, 運營機關은 組合員總會를 비롯하여 執行機關인 常務委員會와 評議委員會 그리고 組合財產과 常務行為를 監查하는 監事會의 機構下에 運營도록 한다.

세째, 主된 事業遂行으로서는 ① 農村日用品을 共同購入하여 配給 및 販賣하는 消費事業, ② 農業倉庫 및 生產工場을 經營하고 生產物을 委託 또는 共同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生產事業, ③ 組合員의 農資融通 및 賒金便宜의 圖謀하는 信用事業, ④ 重要한 農機具 및 生產施設을 設置하여 一般組合員의 利用에 提供하는 利用事業, ⑤ 醫院, 沐浴湯, 理髮所 등을 設置하여 一般組合員의 利用에 提供하는 衛生事業 등 5種이 있다.

#### IV. 綜 合

첫째, 日帝下 自生的 및 自律的인 農民組織으로는 小作人相助會를 비롯하여 朝鮮勞動共濟會 및 農民社 등이 主軸이 되어 活動하고 있었다.

둘째, 日帝下 自生的 및 自律的인 農民組織은 1919년의 3·1運動以後 1920年代에 접어들면서 自主的 發展向上의 意識確立과 1920年代 中半以後에 小作爭議運動의 限界를 克服 止揚하는 次元에서 結成이 이룩되고 있었다.

세째, 日帝下 自生的 및 自律的인 農民組織은 自主的인 次元에서 隣保相助精神 및 相扶相助精神의 理念에서 協同의으로 組織結成된 團體이 있다.

네째, 日帝下 自生的 및 自律的인 農民組織의 活動은 農民相互間의 利害增進에 第一次的目的을 두고 있어서 農民의 啓蒙事業을 비롯하여 農產物의 購買 및 販賣를 主軸으로 한 韓旋事業의 側面에서 이룩되고 있었다.